

의안번호	2212732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G488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,
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,
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,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,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644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1,458억원(연평균 486억원)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자동차세, 부가가치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106조의 2제1항)	-567	-655	-80	-1,301	-434
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(안 제107조의2제1항)	-23	-23	-	-46	-23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(안 제111조제1항제2호)	-13	-13	-	-26	-13
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(안 제111조의5제1항)	-41	-43	-	-85	-42
합계	-644	-734	-80	-1,458	-48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6조의2 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) 제1항	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-
2	안 제107조의2 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제1항	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-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11조제1항 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	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-
4	안 제111조의5제1항 (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)	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 - 감면액: 리터당 56원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6조의2 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) 제1항	○	-
2	안 제107조의2 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제1항	○	-
3	안 제111조제1항 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	○	-
4	안 제111조의5제1항 (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연장

□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

○ 최근 휘발유·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¹⁾,

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반영

-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,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
 - 매년 징수 기간(부가가치세: 분기, 그 외 세목: 월)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나.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

- 조세지출의 과거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최근 전망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다.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면세 및 연안화물선용 경유 감세(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)

- 연장된 일몰기한을 고려하여 2026~2027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개별소비세)의 부가세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연장

1) 추계방법

-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 2020~2024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

1) 최근 유류세 인하 적용 현황: (2018.11.6.~2019.5.6.) 15% 인하 → (2019.5.7.~8.31.) 7% 인하 → (2021.11.12.~2022.4.30.) 20% 인하 → (2022.5.1.~6.30.) 30% 인하 → (2022.7.1.~12.31.) 37% 인하 → (2023.1.1.~2024.6.30.) 경유 37% 및 휘발유 25% 인하 → (2024.7.1.~2024.10.31.) 경유 30% 및 휘발유 20% 인하 → (2024.11.1.~2025.4.30.) 경유 23% 및 휘발유 15% 인하

[표 2]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천kl, %)

유종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경유	76	81	86	81	82	2.0
중유	50	55	55	54	46	-1.9

자료: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간접세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자동차세(주행분),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
- 추계기간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
 -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,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(조정계수)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

[표 3] 현행 유종별 세율

유종	교통·에너지·환경세 (A)	개별소비세 (B)	교육세 (C)	자동차세(주행분) (D)	부가가치세 (E)
경유	375원/L ¹⁾	—	A×15%	A×26%	(세전가격 + 제세부담금 + 품질검사수수료 ³⁾) ×10%
중유	—	17원/L	B×15%	—	
윤활유 ²⁾	—	—	—	—	

주: 1) 2026년 이후 경유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율은 탄력세율인 375원/L를 반영

2)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

3) 품질검사수수료는 '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'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.469원/L

- 부가가치세 추계 시,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
-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실적인 2020~2024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²⁾

2) 두바이유 가격(달러/배럴): ('20) 42.29 ('21) 69.41 ('22) 96.41 ('23) 82.10 ('24) 79.58 ('25.3.) 72.02

[표 4]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원/L)

유종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경유(선박용)	416	581	1,090	914	857	772
중유	451	606	895	786	816	711

자료: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(www.petronet.co.kr)

2) 추계결과

(1)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

- 추계기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4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(2020~2024년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5]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: 2025~2027년

(단위: 천kl)

유종	2025	2026	2027
경유	84	85	87
중유	46	45	44

-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
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= 경유 공급량 추정치 × 세율(375원/L) × 조정계수*
- 개별소비세액 = 중유 공급량 추정치 × 세율(17원/L) × 조정계수*

*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,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(2020년 기준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1.083, 개별소비세 0.822)

[표 6]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(귀속):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-347	-354
개별소비세	-6	-6

(2) 교육세 및 자동차세

□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(주행분)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(surtax)이므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

- 교육세액 = (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추계액 + 개별소비세 추계액) × 15%
- 자동차세액(주행분) =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추계액 × 26%

[표 7]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 감면액 추계(귀속): 2026~2027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
교육세	-53	-54
자동차세(주행분)	-90	-92

(3) 부가가치세

□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

- 부가가치세액 =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³⁾ × 10% × 조정계수*
 - 경유 공급가액 = (세전가격+교통·에너지·환경세+교육세+자동차세+품질검사수수료)×
경유 공급량 추계
 - 중유 공급가액 = (세전가격+개별소비세+교육세+품질검사수수료)×중유 공급량 추계
- *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(2020년 기준, 1.028) 적용

[표 8]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(귀속): 2026~2027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
부가가치세	-148	-150

3)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,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(조정계수)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

(4) 추계 결과

-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, 세수효과는 2026년 567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1,301억원(연평균 434억원) 감소 예상
 -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
 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/12, 차년도에 1/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 -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/4, 차년도에 1/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
[표 9]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(징수): 2026~2028년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		-318	-354	-30	-701	-234
- 개별소비세		-6	-6	-1	-12	-4
- 교육세		-49	-54	-5	-107	-36
- 자동차세(지방세)		-83	-92	-8	-182	-61
- 부가 가치세	국세, 74.7%	-83	-112	-28	-223	-74
	지방소비세, 25.3%	-28	-38	-9	-75	-25
전체		-567	-655	-80	-1,301	-434

나.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

-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특례적용 관광숙박시설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동 공급확인서 제출 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

-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0억원 수준을 보였으며 2025년 15억원, 2026년 23억원 등으로 전망

[표 10]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: 2022~2026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 ¹⁾	2026 ¹⁾
조세지출	2	5	10	15	23

주: 1) 정부 전망액

자료: 정부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23억원 등 향후 2년간(2026~2027년) 총 46억원(연평균 23억원) 감소 예상

[표 11]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시 세수효과: 2026~2027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평균
부가가치세	-23	-23	-46	-23

주: 1. 지방소비세(25.3%) 포함 금액

다.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(교통·에너지·환경세) 면제

- (조세지출 실적)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1억원임

[표 12]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실적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합 계	15	15	9	10	11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13	13	8	9	10
교육세	2	2	1	1	1
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추계방법)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(교통·에너지·

환경세)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0~2024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치인 12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
 ○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(교통·에너지·환경세)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3억원 등 2026~2027년까지 2년간 총 26억원(연평균 1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(제111조제1항제2호)	-13	-13	-26	-13
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개별소비세)(A)	-11	-11	-21	-11
교육세(B)	-1	-1	-3	-1
부가가치세[(A+B) × 10%]	-1	-1	-2	-1

라.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

- (조세지출 실적)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33억원이고, 2025년 전망은 39억원임

[표 14]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 (전망)
합 계	19	30	32	33	33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17	26	28	29	29
교육세	3	4	4	4	4
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추계방법) 한국해운조합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 대상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세액감면 대상 연안화물선

용 경유 공급량을 추정

- 2025년 이후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은 2022~2024년 연평균 증가율 (5.2%)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15] 한국해운조합 세액감면 대상 경유(MGO) 공급 현황

(단위: kl)

구 분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공급량	47,471	51,074	52,573	5.2%

자료: 한국해운조합

□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 추정치에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단가(56 원/L)을 곱하여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액을 추계
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부가세인 교육세와 각각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액까지 함께 추계
 - 교육세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의 15%, 부가가치세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에 10% 부과

[표 16] 추계기간 동안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

(단위: kl, 억원)

	2026	2027
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(A)	58,223	61,272
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액 ($B=A \times 56 \text{원/L}$)	33	34
교육세 감면액 ($C=B \times 15\%$)	5	5
부가가치세 감면액 ($[(B+C) \times 10\%]$)	4	4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41억원 등 2026~2027년까지 2년간 총 85억원(연평균 4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(제111조의5제1항)	-41	-43	-85	-42
교통·에너지·환경세 (개별소비세)	-33	-34	-67	-33
교육세	-5	-5	-10	-5
부가가치세	-4	-4	-8	-4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	박성은	
	신홍철	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